

의안 번호	3
----------	---

제출년월일: 2002.7. 2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변경안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2. 주 요 골 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심의대상은 미탄소방출장소 건물 신축 1동, 210㎡ 및 용평소방출장소 이전부지 매입 1필지 1,660㎡입니다.

1) 미탄소방출장소 신축

미탄 소방출장소는 85년 건축된 23평 규모의 건물로 노후 협소하고 통로가 좁은 면사무소 뒤에 위치하여 긴급출동에 장애도 있는 실정이어서, 철근콘크리트 2층210㎡ 규모로 신축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대체를 갖추하고자 합니다.

2) 용평소방출장소 이전부지 매입

용평소방출장소 건물은 부지가 협소한 면사무소 내에 위치하여 비상활동에 애로가 있으며 건물도 노후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 한 바, 향후 이전부지 확보를 위하여 면사무소 우측에 접속된 토지인 용전리 135-11번지 잡종지 1,660㎡를 매입하여 용평 면사무소 부지로 임시 활용하고, 향후 강원도에서 소방출장소 건물 신축비를 지원받을 경우 소방출장소 부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3. 관계법규 및 지침

- 가. 지방재정법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 나.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지적도

총 괄 표 (7-1)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², 천원)

구 분	합 계			당 초			변경 계획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합계	토지	13	136,033	687,686	12	134,373	625,602	1	1,660	62,084
		건물	6	2,865	2,460,626	5	2,655	2,240,626	1	210	220,000
		기타									
	매입	토지	12	135,243	682,875	11	133,583	620,791	1	1,660	62,084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790	4,811	1	790	4,811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6	2,865	2,460,626	5	2,655	2,240,626	1	210	220,000	
	기타										
처 분	합계	토지	4	9,942	152,506	4	9,942	152,506			
		건물									
		기타									
	매각	토지	3	9,152	148,548	3	9,152	148,548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790	3,958	1	790	3,958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2년도 취득재산 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²,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시			취득 금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수량				
합계		건물 1 동 토지 1 필지	210 1,660	220,000 62,084			
1	철근콘크리트	미탄 창리 618	210	220,000	하반기	미탄소방출장소신축	신축
2	잡종지	용평 용전리135-11	1,660	62,084	하반기	용평 소방출장소 이전부지 매입	김관수 외1

관 계 법 규 (발취)

지 방 재 정 법

-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시군의 경우 1억원이상)---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취득의 경우 1건당 (1,000m²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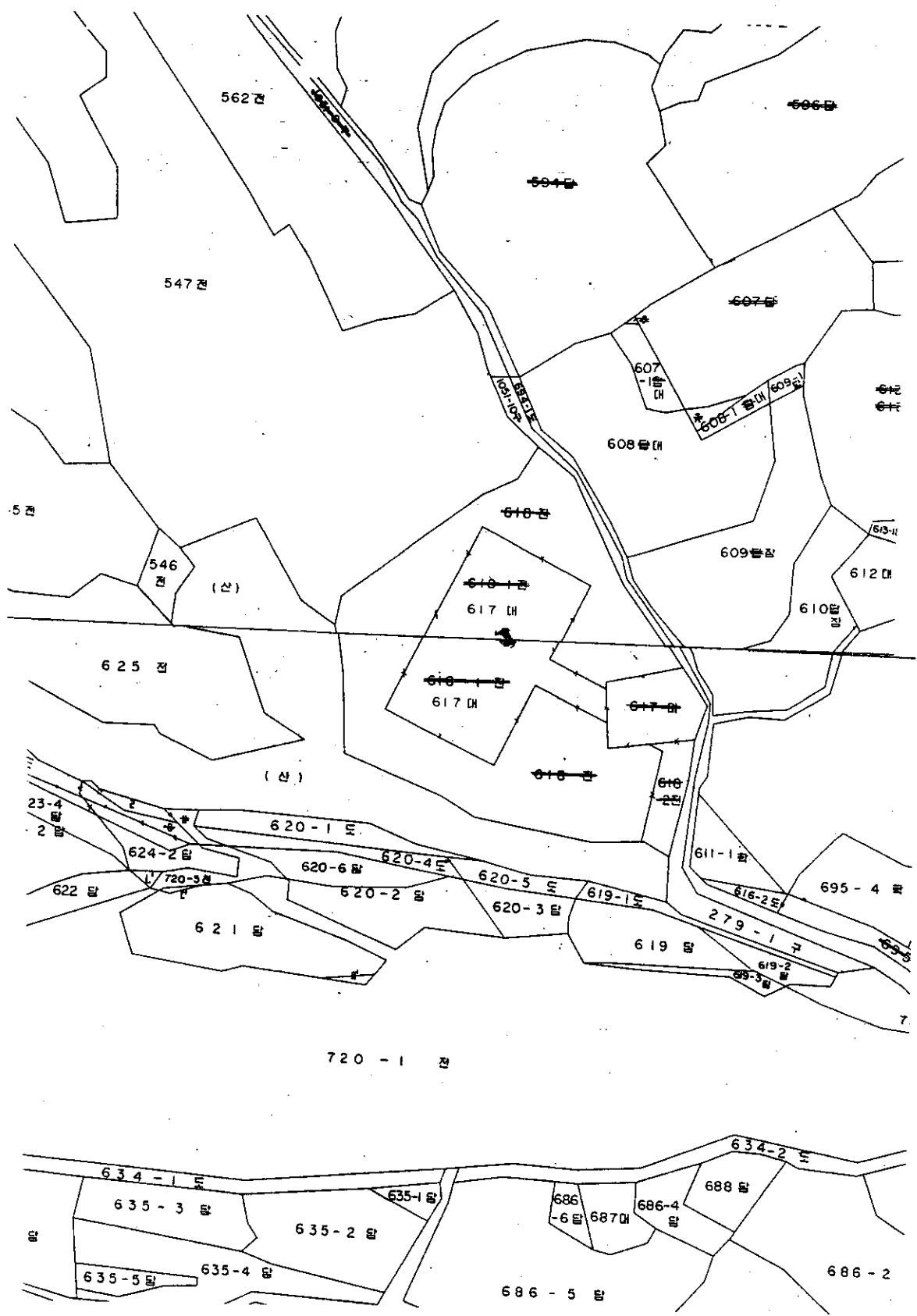
-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4. 재산의 취득기준

가. 2002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720 - 1 단

